

★ ◎

문서번호	세무2과-2662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98호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성윤	박문식	박재순	김종순	이비오	02/09 정원오
협 조	세입정리팀장 김인수				
	영치팀장 임완선				

- 재정운영 특별대책 및 市 인센티브 평가 대비 -
2015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

2015. 2.



성 동 구

(세 무 2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type="checkbox"/>

● 홍 보 제 목 : 2015년 지방세 체납징수 로드맵 구축

● 중점 홍보사항

-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 그 간의 체납 징수실적 등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 추진 개요	1
II . 지방세 체납규모 및 징수실적	2
1. 지방세 체납규모	2
2. 체납 징수실적	3
3. 징수실적 평가(분석)	4
III . 2015년 중점 추진사항	6
IV . 세부 추진계획	7
1.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추진	7
2.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10
3.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12
4.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추진	14
5. 친절한 민원응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15
V . 행정사항	16

- 재정운영 특별대책 및 市 인센티브 평가 대비 - 2015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市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납세 형평 및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체납징수 전 과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징수체제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시 인센티브 평가 대비
- ✓ 「2015년 재정운영 특별대책」(구청장 방침 제637호, 기획예산과-14112호) 연관

■ 추진기간: 2015년 1월 ~ 12월

■ 체납총액: 15,213백만원 (2015.1.1. 기준 - 2014년 부과 체납액 포함)

- 구 세: 16,302건 1,106백만원(총 체납액의 7.3%)
- 시 세: 72,157건 14,107백만원(총 체납액의 92.7%)

■ 징수목표: 총 3,744백만원

- 구 세: 448백만원 - (전년목표 358백만원 대비 90백만원 25% 증가)
- 시 세: 3,296백만원 - (2015년 징수목표 미 배시 - 전년목표 적용)

■ 추진방향

- 총력 징수체제 구축, 분야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 추진

II 지방세 체납규모 및 징수실적

1 지방세 체납규모

■ 지방세 체납현황(2015년 1월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현 년 도			지 난 년 도		
	건 수	금 액	점 유 비	건 수	금 액	점 유 비	건 수	금 액	점 유 비
총 계	88,459	15,213	100%	61,030	11,227	73.8%	27,429	3,986	26.2%
구 세	16,302	1,106	7.3% (100%)	9,021	687	4.5% (62.1%)	7,281	419	2.8% (37.9%)
시 세	72,157	14,107	92.7% (100%)	52,009	10,540	69.3% (74.7%)	20,148	3,567	23.4% (25.3%)

※ 점유비는 체납금액 대비 비율이며, 괄호안의 비율은 시·구세 체납액 대비 해당항목 비율임

- 지방세 총 체납액: 15,213백만원
 - ▶ 현 년 도 체납액 11,227백만원(총 체납액의 73.8%)
 - ▶ 지 난 년 도 체납액 3,986백만원(총 체납액의 26.2%)
 - 구 세 총 체납액: 1,106백만원(총 체납액의 7.3% 점유)
 - ▶ 현 년 도 체납액 687백만원(구세 총 체납액의 62.1%)
 - ▶ 지 난 년 도 체납액 419백만원(구세 총 체납액의 37.9%)
 - 시 세 총 체납액: 14,107백만원(총 체납액의 92.7% 점유)
 - ▶ 현 년 도 체납액 10,540백만원(시세 총 체납액의 74.7%)
 - ▶ 지 난 년 도 체납액 3,567백만원(시세 총 체납액의 25.3%)
- ✔ 시세 체납액이 구세의 약 13배(12.8:1), 현년도 체납액이 지 난 년 도 의 약 3배(2.8:1) 수준임

■ 區稅 체납 현황(세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재 산 세		등 록 면 허 세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구 세	16,302	1,106	9,755	887	6,518	208	29	11
(점유비)	100%	100%	59.8%	80.2%	40.0%	18.8%	0.2%	1.0%

※ 기타세목: 舊 지방소득세(종업원분), 舊 주민세(재산분), 舊 사업소세

■ 市稅 체납 현황(세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취 득 세		지 방 소 득 세		자 동 차 세		주 민 세		재 산 세 특 례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시 세	72,157	14,107	342	1,006	6,755	5,901	33,579	3,681	31,481	452	-	1,073	-	1,994
점유비	100%	100%	0.5%	7.1%	9.4%	41.8%	46.5%	26.1%	43.6%	3.2%	-	7.6%	-	14.2%

※ 기타세목: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시분) 등

2 체납 징수실적

2014년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목표 (A)	체납액 (B)	징수액 (C)	미수납 (B-C)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대비 (증△감)
합 계	3,654	8,582	3,561	5,022	41.5%	97.5%	△93 (△2.5%)
구 세	358	837	391	447	46.7%	109.1%	33 (9.1%)
시 세	3,296	7,745	3,170	4,575	40.9%	96.2%	△126 (△3.8%)

※ 미 수납액(B-C)은 결손처분액(시세 1,008백만원, 구세 27백만원) 포함된 수치임

● **2014년 구세 체납 징수액: 총 391백만원**

⇒ 세입목표(358백만원) 대비 33백만원(9.1%) 초과징수

● **2014년 시세 체납 징수액: 총 3,170백만원**

⇒ 세입목표(3,296백만원) 대비 △126백만원(△3.8%) 부족징수

최근 5년 區稅 체납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A)	부 과 (B)	징 수 (C)	목표대비 (증△감)	징수율(C/B)		진도율(C/A)		비고
					우리구	구평균	우리구	구평균	
2014년	358	837	391	33	46.7%	35.8%	109.1%	117.2%	
2013년	335	747	421	86	56.4%	37.7%	125.9%	100.6%	
2012년	348	651	399	51	61.4%	42.0%	114.7%	100.2%	
2011년	375	667	335	△40	50.3%	42.5%	89.4%	108.0%	
2010년	361	697	379	18	54.4%	43.0%	105.2%	87.8%	

최근 5년 市稅 체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목 표 (A)	부 과 (B)	징 수 (C)	목표대비 (증△감)	징수율(C/B)		진도율(C/A)		비고
					우리구	구평균	우리구	구평균	
2014년	3,296	7,745	3,170	△126	40.9%	39.8%	96.2%	103.6%	
2013년	3,467	7,310	3,804	337	52.0%	45.4%	109.7%	110.2%	
2012년	2,919	5,611	3,408	381	60.7%	49.9%	116.8%	92.1%	
2011년	2,892	6,003	2,859	△33	47.6%	46.5%	98.9%	98.4%	
2010년	2,293	5,282	2,557	264	48.4%	48.9%	111.5%	115.9%	

3 징수실적 평가(분석)

구세 징수실적 분석(2014년)

- 2014년 구세 체납 징수액: 총 391백만원
 - ⇒ 세입목표(358백만원) 대비 33백만원(9.1%) 초과징수
 - **잘된 점**
 - ▶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세입목표 초과달성
 - ▶ 체납 징수율은 46.7%로 자치구 평균징수율 39.8%(최고 68.2%, 최저 10.3%) 대비 10.9%p 높음
 - **미흡한 점**
 - ▶ 우리구 최근 5년 평균징수율(53.8%) 대비 2014년도 징수율 7.1%p 하락
- ▶▶▶ 2014년의 경우 세입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징수율은 최근 5년 평균징수율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금년에는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음

※ [구세] 세입목표 대비 징수실적(최근 5년)



※ [구세] 성동구·자치구 평균 징수율(최근 5년)



시세 징수실적 분석(2014년)

- 2014년 시세 체납 징수액: 총 3,170백만원
 - ⇒ 세입목표(3,296백만원) 대비 △126백만원(△3.8%) 부족징수

● **잘된 점**

- ▶ 「취득세」 징수율은 61.3%로 자치구 평균(38.6%) 대비 22.7%P 높음
- ▶ 「지방소득세」 징수율 역시 23.6%로 자치구 평균 징수율(19.2%) 대비 4.4%P 높은 실적을 보임

● **미흡한 점**

- ▶ 「자동차세」는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매매업자 도산으로 상품용 차량의 다수가 대포차로 유통됨에 따라 부실체납 발생으로 징수실적 부진
- ✔ 자동차세 징수율은 39.7%로 전년 징수율(61.3%) 대비 △21.6%P 하락

▶▶▶ 2015년에는 자동차세 등 부진세목에 대해 특사경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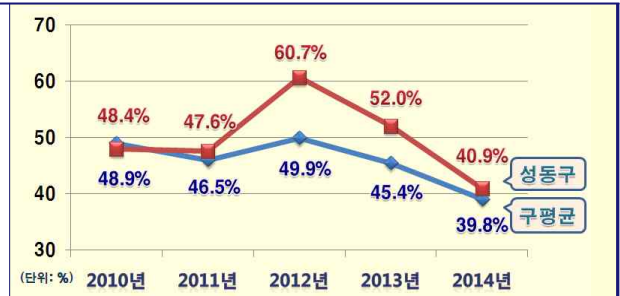
※ [시세] 세입목표 대비 **징수실적**(최근 5년)

- 최근 5년 세입목표 무리 없이 달성
- 2012년~2013년은 자치구 최고수준의 징수실적 달성 (시 인센티브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 ※ 2014년의 경우 세입목표 소폭 미달 (목표달성도 96.2% - 126백만원 부족)



※ [시세] 성동구·자치구 평균 **징수율**(최근 5년)

- 우리구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49.9%
- 자치구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46.1% (우리구 징수율이 자치구 평균 대비 3.8%P 높음)
- ※ 2012년을 기점으로 최근 2년간 징수율 하락 추세를 보임(2014년은 자치구 평균수준)



■ **분석결과(종합)**

- 최근 5년간 시·구세 모두 체납 징수목표는 큰 무리 없이 달성함
- 특히, 2012년 ~ 2013년의 경우는 자치구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거둬으로써 세입확충에 기여함(시 인센티브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 다만 2014년의 경우, 시세는 징수목표에 미달하였고 징수율은 5년 평균에 못 미치는 등 최근 2~3년 대비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임

▶▶▶ 2015년 체납 총력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및 시 인센티브 우수성적 추진

Ⅲ 2015년 중점 추진사항

1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추진

-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상반기 3월~7월, 하반기 9월~12월)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강화(1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전담)
-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 확행(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각종 채권 등)
-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영치 3,500대, 견인 100대 목표)
- 고액·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부동산 및 차량)
- 고액·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선별)

2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3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 시효결손(매월), 불납결손(상반기 6월~7월, 하반기 10월~11월)

4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추진

- 평가목표: ‘최우수구’
- 추진방법: 평가항목별 담당자 지정 책임 추진(별도계획 수립 추진)

5 친절한 민원응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민원 친절응대를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
- 고질·반복민원 상담 전담창구 개설: 38세금징수팀장(민원 전담)
- 사회적 약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무소득자, 소년소녀가장 등
- 생계형 체납자 담세력 회복 지원

IV 세부 추진계획

1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추진

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추진개요

- 목 적: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활동 추진
- 추진기간: 상반기 5개월(3월~7월), 하반기 4개월(9월~12월)
- 추진방법: 별도 세부계획 수립·추진

주요 추진사항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납부독려: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 이월체납(2014년 부과분)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철저(압류 확행)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 무재산, 파산, 소재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자 선별 결손처분

나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강화(100만원 이상 체납 전담)

추진개요

- 대 상: 1,502명 8,607건 5,164백만원(100만원 이상 - 총체납의 44%)
- 정리목표: 1,550백만원(대상액의 30%)
- 추진방법: 「성동38기동반」 편성·운영(3개조 15명) - 연중 운영

추진방법

- 체납금액별 정리담당 지정·책임징수 추진
 - ▶ 1,000만원 이상: 38세금징수팀장(72명/ 1,745백만원)
 - ▶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동 담당(1,430명/ 3,419백만원)
-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신설): 체납사유, 거주현황, 재산여부 등 조사
- 체납 유형별 정리
 - ▶ 재정 형편상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 유도
 - ▶ 有 재산자로 장기간 납부회피 시 압류물건 공매 적극추진

다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 확행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압류대상: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각종 채권 등 환가가능 재산
- 추진기간: 2015. 3월 ~ 5월
- 추진방법: 고액체납자 순으로 순차 압류(사전 압류예고 후 추진)

■ 추진방법

- 부동산 압류: 100만원 이상(3월), 50~100만원(4월), 50만원 이하(5월)
- 차량 압류: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압류 - 압류시기: 3월
- 예금 압류: 나이스신용정보시스템 활용 - 압류시기: 3월 ~ 4월
- 조세환급금, 매출채권, 보험, 공탁금 등 압류: 확인 즉시 압류

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추진기간: 2015. 1월 ~ 12월(연중 추진)
- 추진목표: 번호판 영치 3,500대, 상습체납차량 견인 100대
(2014년 실적: 번호판 영치 3,218대, 견인 79대)
- 추진방법: 영치팀 편성(총 9명), 체계적 영치활동 추진

■ 추진방법

- 영치반 편성: 총 9명(영치팀 직원 3명, 파견 영치반 3명, 사회복지무원 3명)
- 영치 및 견인방법
 - ▶ 자동차세 1회 체납: 영치예고(예고기간 경과 후 미납차량 영치)
 -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 ▶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 강제견인 조치
 - ▶ 「지능형CCTV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 적극 활용(2014년 1월 개발 시행)
 - ▶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병행 시행

마 고액·고질채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 공매대상: 부동산(300만원 이상 체납) 및 차량(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
- 공매목표: 부동산 80개 물건, 차량 100대
- 공매기관: 부동산(한국자산관리공사), 차량(주-오토마트)
 - ▶ 부동산: 공매 집중기간 운영(상반기 4월 ~ 5월, 하반기 9월 ~ 10월)
 - ▶ 차 량: 연중 추진(6회 이상 체납차량 견인 입고 후 미납시 공매)
- ✔ 2014년 공매의뢰 실적: 부동산 31개 물건, 차량 52대

추진방법

- 부동산 공매
 - ▶ 사전 공매예고문 발송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예방
 - ▶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공매실익 여부 검토)
 - ▶ 예고기한 내 미납자에 대하여 공매의뢰
- 차량 공매
 - ▶ 상습체납차량으로 견인된 차량 중 자동차세 미납차량 공매
 - ▶ 공매 낙찰금 배분 및 소유권이전 촉탁은 담당자 수행
- ✔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가해지는 강력한 처분이므로 공매의뢰 전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공매사실을 충분히 공지 후 시행

바 고액·고질채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신설)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절차]
- 대 상: 5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중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
- 추진기간: 연중 추진(가택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 500만원 이상 체납자(2015년 1월 현재): 222명 2,698백만원

■ 추진방법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대상자 발취: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 ▶ 3인 이상 1개조 편성, 거주지 수색 및 동산압류
 - ▶ 가택수색 有 경험 부서인 서울시 38기동반 업무협조
(추진방법 및 인력지원 협조, 필요시 우리구 특별사법경찰팀 협조)
- 동산 압류 후에도 미납한 경우에는 동산공매 실시

2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가 관허사업 제한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 대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 추진기간: 연 2회 실시(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2014년 하반기만 시행
- 요구기관: 인·허가의 주무관청(부서)
- 추진방법: 사전 예고 후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요구

✓ 관허사업 제한 현황(2012년~2014년)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관허사업 제한요구	50	1,409	270	143	1,105	661	72	632	74

■ 추진방법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전 예고문 발송하여 납부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
- 예고기한 내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 인·허가 주무관청(부서)

나 공공기록 정보제공(신용정보제공)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추진기간: 연 2회 실시(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2014년 하반기만 시행
- 제공기관: 전국은행연합회
- 대상(요건)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추진방법

- 정보제공 전 예고문 발송하여 납부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
- 예고기한 내 미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 ⇨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 제공방법: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nkfb.cif.or.kr>)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등록 후 정보제공 사실 체납자에 통지)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3천만원 이상)

추진개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공개일자: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서울시 수합 일괄공개)
- 공개대상: 1년 이상 체납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매년 3월1일 기준)
- 공개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 공개방법: 관보,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신문 등
- 공개항목: 성명(상호), 주소, 나이, 직업, 체납내역 및 체납요지 등 공개

공개방법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4월경)
-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납부촉구 및 소명기회 부여: 6개월간
- 소명기간(6개월) 경과 후 최종 대상자 결정: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하여 최종 공개대상자 결정(11월경) ⇨ 12월 셋째 주 일괄공개
- ✓ 2014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미시행

라 고액·상습채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추진개요

-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대 상: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유효여권 소지자 중 압류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 추진기간: 2015년 10월(서울시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출국금지 요청기간: 6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 처리기관: 법무부장관(서울시에서 자치구의 대상자를 수합하여 일괄 요청)
- ✓ 출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출입국관리과)에서 적정성 등 심사 후 결정

추진방법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제공: 서울시
- 체납자 실태조사: 재산현황, 우선채권 여부, 출국횟수, 장기체류 등
- 조사결과 출국금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서울시에 요청

3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가 시효결손

추진개요

- 의 의: 시효결손이란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됨에 따라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제96조[결손처분]
- 결손대상: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한 체납
- 결손시기: 매월 시행(당해 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 결손처분)

결손방법

- 시효결손 대상자 발췌: 시효완성 1개월 전 대상자 발췌
- 재산조사 실시: 재산확인 즉시 압류하여 시효중단 후 체납처분 진행
- 결손처분 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결손처분

나 불납결손

추진개요

- **의 의:** 불납결손이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중지 또는 유보하는 행정처분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및 시행령 제86조[결손처분]
- **결손대상:**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 **결손목표:** 총 체납액의 30%
- **결손시기:** 상반기 6월~7월, 하반기 10월~11월

결손방법

- **실태조사 실시**
 - ▶ 거주사항, 사망, 말소, 해외이주 등 조사
 - ▶ 거주지(사업장) 방문하여 체납사유, 휴·폐업, 계속사업여부 조사
- **재산조사 실시**
 -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체납자 소유재산 전수조사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조사 병행 실시
 - ▶ 조회결과 소유재산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 **결손처분 실시**
 - ▶ 실태조사 및 재산조사 결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
 - ▶ 압류재산이 있지만 체납액에 전액 총당하기 어려운 경우 부분결손
 - ※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 없이 결손처분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사후관리

- 불납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매 6개월마다 재산조사 실시
- 조사결과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 후 정상적인 체납처분 진행

4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추진

추진개요

- 평가분야: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분야
- 평가부서: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 평가목표: **‘최우수구’**
- 추진방법: 2015년도 평가기준 확정 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인센티브: 총 9억원 - 16개구 시상
 - 최우수(4) 9천만원, 우수(4) 6천5백만원, 장려(4) 5천만원, 노력(4) 2천만원

추진방향

- 평가 지표별 담당자 지정 책임 추진(붙임 5 - 평가지표 및 담당자)
- 담당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및 분석결과 Feed-back
- 평가기준 분석 후 우리구 실정에 불리한 항목 집중 추진

세부 추진계획 ⇨ 별도계획 수립 · 시행 (2015년 평가기준 확정 후)

2014년 평가결과 분석

《우수성과》 - 잘된 점

- 세목별 목표달성도(배점 50점) ⇨ 서울시 상위권(자동차세 제외)
 - ▶ 취득세(2위), 지방소득세(6위), 재산세(6위)로 서울시 상위권 수준
 - ▶ 재산세특례분(11위) 및 기타세목(9위)은 서울시 중위권 유지
- ✔ 자동차세(25위)는 장한평 차량매매업자 도산에 따른 대포차량 유통으로 목표달성도 하위권

취득세(10점)		지방소득세(16점)		자동차세(13점)		재산세(5점)		재산세특례(5점)		기 타(1점)	
달성도	순위	달성도	순위	달성도	순위	달성도	순위	달성도	순위	달성도	순위
125.6%	2위	63.0%	6위	81.5%	25위	256.6%	6위	121.9%	11위	61.5%	9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배점 5점) ⇨ 서울시 1위
 - ▶ 번호판 영치 대수(3점): 3,218대 영치(2위 - 자치구 평균 2,371대)
 - ▶ 번호판 영치율(2점): 16.2%(1위 - 자치구 평균 9.6%)
 - 영치팀 신설(2014.1.1.)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영치노력 강화
 -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 개발로 영치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부진사유》 - 미흡한 점

- **자동차세 목표달성도(배점 13점) 및 신장율(배점 4점) 부진**
 - ▶ 자동차세 목표달성도: 81.5%(25위) ⇨ 자치구 평균(126.3%) 대비 44.8%P 미달
 - ▶ 자동차세 신장률: -24.7%(25위) ⇨ 자치구 평균(-3.0%) 대비 21.7%P 미달
- **부진원인**
 - ▶ 최근 수년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대비 목표배시액 증가 (서울시 평균 목표배시율 33.8%, 우리구 목표배시율 45.2%)
 - ▶ 장한평 자동차매매업자의 도산에 따라 감면대상인 상품용 차량의 다수가 대포차 유통 및 대포차량의 감면분 자동차세 일시 부과로 고질체납 이월됨 (대포차 부과 2,342건 362백만원, 상품차량 감면분 추징 2,823건 338백만원)
- ➡ 2015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 효율적 추진으로 평가에 우수성적을 거두고자 함

5 친절한 민원응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체납민원 친절응대를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

- **교육대상:** 체납담당 직원(38세금징수팀 및 영치팀 직원)
- **교육자:** 세무2과장(분기별 1회) 및 소관 팀장(매월 1회)
- **교육내용:** 방문민원 및 전화응대 기법, 친절교육 등

■ 고질·반복민원 상담 전담창구 개설

- **대상민원:** 무능력자, 사회적 약자, 고질·반복 민원
- **전담창구:** 38세금징수 팀장 ⇨ 체납민원 전담
- **추진내용:**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친절응대로 민원발생 사전 방지

■ 친절한 체납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예방

- **체납안내문 발송:** 개인별 전체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연 2회)
-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전 예고문 발송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예방
-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

■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무소득자, 소년소녀가장 등
- 추진사항
 - ▶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수당, 노령연금 등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
 - ▶ 무재산, 무소득자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적극 추진
 - ▶ 고령자, 담세력 없는 자에 대한 신용불량 해제 적극 추진

■ 생계형 체납자 담세력 회복 지원

- 일시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유도
- 은행 담보대출로 세금납부를 원하는 경우 선 압류 해제
- 1회 이상 분납 후 분납계획 제출 시 공공기록 정보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V 행정 사항

■ 주요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 주요 추진분야(별도계획 수립)
 - ▶ 상·하반기 체납 특별정리 추진
 - ▶ 서울시 「2015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추진

■ 체납자 방문 독려 시 민원불편 최소화 및 예절 준수

- 「38징수기동반」 방문 징수활동은 2인 1조 출장 원칙
- 방문시 납세자 권익 보장 및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 최소화
-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금지, 공무원 품위 및 예의준수

- 【붙임】
1. 2015년 체납징수 월별 추진계획
 2.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3.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2010년~2014년)
 4. 체납처분 추진실적(2012년 ~ 2014년)
 5.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표 및 담당자
 6. 체납자 조사 복명서(양식)

〈붙임 1〉

2015년도 체납징수 월별 추진계획

월별	주요 추진업무	공동 추진사항	비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 수립 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지난년도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지난년도 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부동산 압류 추진(100만원 이상) 차량 압류 및 예금 압류 추심 2014년 부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부동산 압류(50만원~100만원 미만), 예금압류 각종 예고문 발송(행정제재 예고, 공매예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부동산 압류 추진(50만원 미만) 부동산 공매의뢰(상반기) 1차 관허사업제한, 1차 공공기록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불납결손 처리(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불납결손 처리(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각종 예고문 발송(행정제재 예고, 공매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불납결손 처리(하반기) • 부동산 공매의뢰(하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2차 관허사업제한, 2차 공공기록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 결정(2차 위원회 개최) 불납결손 처리(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셋째 주 월요일) 100만원이상 체납자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붙임 2>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2015.1.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목표 (A)	부과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대비(증△감)
지방세 계	256,307	345,573	328,705	16,868	95.1%	128.2%	72,398
구 세 계	64,001	70,815	69,672	1,143	98.4%	108.8%	5,671
재 산 세	55,569	59,820	59,230	590	99.0%	106.6%	3,661
등록면허세	8,074	10,142	10,037	105	99.0%	124.3%	1,963
기 타	-	16	14	2	84.9%	-	-
지 난 년 도	358	837	391	446	46.7%	109.1%	33
시 세 계	192,306	274,758	259,033	15,725	94.3%	134.7%	66,727
취 득 세	91,951	104,919	103,533	1,386	98.7%	112.6%	11,582
지방소득세	42,178	72,698	67,869	4,829	93.4%	160.9%	25,691
자 동 차 세	16,777	19,246	16,633	2,613	86.4%	99.1%	△144
주 민 세	6,788	7,751	7,453	298	96.2%	109.8%	665
재 산 세 특 례	26,757	30,483	29,735	748	97.5%	111.1%	2,97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559	6,034	5,921	113	98.1%	129.9%	1,362
기 타	-	25,882	24,719	1,163	95.5%	-	-
지 난 년 도	3,296	7,745	3,170	4,575	40.9%	96.2%	△126

※ 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집계제외, 미수납액(B-C)은 결손액 포함

● **2014년 구세 징수액: 총 69,672백만원**

⇒ 세입목표(64,001백만원) 대비 5,671백만원(8.8%) 초과징수

● **2014년 시세 징수액: 총 259,033백만원 징수**

⇒ 세입목표(192,306백만원) 대비 66,727백만원(34.7%) 초과징수

<붙임 3>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2010년~2014년)

• 2015.1.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목표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진도율	목표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2014년	計	3,654	8,582	3,561	41.5%	97.5%	△93	△2.5%
	區稅	358	837	391	46.7%	109.1%	33	9.1%
	市稅	3,296	7,745	3,170	40.9%	96.2%	△126	△3.8%
2013년	計	3,802	8,057	4,225	52.4%	111.2%	423	11.2%
	區稅	335	747	421	56.4%	125.9%	86	25.9%
	市稅	3,467	7,310	3,804	52.1%	109.7%	337	9.7%
2012년	計	3,267	6,262	3,807	60.8%	116.5%	540	16.5%
	區稅	348	651	399	61.4%	114.7%	51	14.7%
	市稅	2,919	5,611	3,408	60.7%	116.7%	489	16.7%
2011년	計	3,267	6,670	3,194	47.9%	97.8%	△73	△2.2%
	區稅	375	667	335	50.3%	89.4%	△40	△10.6%
	市稅	2,892	6,003	2,859	47.6%	98.9%	△33	△1.1%
2010년	計	2,654	5,979	2,936	49.1%	110.6%	282	10.6%
	區稅	361	697	379	54.4%	105.2%	18	5.2%
	市稅	2,293	5,282	2,557	48.4%	111.5%	264	11.5%

● 區稅 세입목표 대비 징수실적

- 2011년의 경우 일시 세입목표에 소폭 미달하였으나 최근5년 간 세입목표 무리 없이 달성
- ※ 2012년, 2013년의 경우 세입목표 대비 14.7%, 25.9% 초과달성



● 市稅 세입목표 대비 징수실적

- 최근 5년 간 세입목표 무리 없이 달성
- 2014년의 경우 세입목표에 소폭 미달
- ※ 2012년 ~ 2013년 시 인센티브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붙임 4>

체납처분 추진실적(2012년~2014년)

■ 압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압류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압류 건수	체납 건수	체납금 액	압류 건수	체납 건수	체납 금액
계	11,752	35,474	8,891	16,448	61,997	11,022	14,083	51,155	6,339
부 동 산	866	3,108	1,859	536	1,825	1,183	1,721	4,589	2,052
차 량	9,255	25,831	3,761	12,144	50,340	7,417	10,258	42,042	3,027
예 금·채 권	410	3,262	2,021	2,637	7,688	1,808	1,599	3,800	1,033
조세 환급금	1,050	1,877	266	854	1,152	111	434	491	55
기 타 재 산	171	1,396	984	277	992	503	71	233	172

■ 공매의뢰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		차 량	
	공매의뢰	체납액	공매의뢰	체납액	공매의뢰	체납액
2014년	83	389	31	280	52	109
2013년	118	286	53	190	65	96
2012년	126	490	73	427	53	63

■ 관허사업제한 실적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관허사업 제 한	50	1,409	270	143	1,105	661	72	632	74

■ 공공기록 정보제공 실적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공공기록 정보제공	156	12,580	4,202	67	3,587	725	-	-	-

■ 변호판 영치 및 견인실적

(단위: 대/ 건/ 백만원)

구 분	변호판 영치			상습체납차량 견인			비고
	영치대수	체납건수	체납액	견인대수	체납건수	체납액	
2014년	3,218	7,221	1,181	79	402	85	
2013년	2,695	6,238	1,061	178	984	189	
2012년	5,003	9,815	1,374	68	365	57	

■ 결손처분 실적

(단위: 대/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5,451	3,091	32,717	3,997	39,839	3,484	
구 세 계	3,171	167	2,740	517	5,407	694	
시효결손	2,904	107	2,458	300	1,662	206	
불납결손	267	60	282	217	3,745	488	
시 세 계	32,280	2,924	29,977	3,480	34,432	2,790	
시효결손	15,705	1,877	14,596	1,824	11,208	1,182	
불납결손	16,575	1,047	15,381	1,656	23,224	1,608	

<붙임 5>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표 및 담당자

• 2014년 평가기준(2015년 평가지표 미 확정)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담 당	비 고
	총 계	100점	박문식	총괄(팀장)
달성도 평 가 (57점)	세 목 별 목 표 달 성 도	50점	정성운 외1	
	• 취득세	10점	정성운	
	• 지방소득세	16점	정성운	
	• 자동차세	13점	정성운	
	• 재산세	5점	정명희	
	• 재산세 특례분	5점	정명희	
	• 기타세목	1점	정명희	
	구 별 월 별 목 표 달 성 도	7점	정명희	
신장률 평 가 (19점)	세 목 별 신 장 률	19점	정성운 외1	
	• 취득세	4점	정성운	
	• 지방소득세	6점	정성운	
	• 자동차세	4점	정성운	
	• 재산세	2점	정명희	
	• 재산세 특례분	2점	정명희	
	• 기타세목	1점	정명희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 가 (19점)	체 납 시 세 정 리 실 적	19점	조원형 외3	
	• 압류재산 공매	4점	조원형, 김금숙	
	• 부동산 공매의뢰	2점	조원형	
	• 자동차 공매의뢰	2점	김금숙	
	• 압류차량 강제견인	3점	고영무	
	• 번호판영치	5점	권희승	
	• 영치건수	3점	권희승	
	• 영 치 율	2점	권희승	
• 결손실적	7점	이운정		
시책사항 평 가 (5점)	시 책 사 항	5점	정성운 외3	
	• 시책협력(시 요청 합동작업)	3점	정성운	
	• 수범사례(우수사례 2건)	1점	정성운	
	• 행정제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1점	조원형 김금숙 김원경	
체납정리 부 적 정 (△10점)	체 납 정 리 부 적 정	△10점	정성운	
	• 체납정리 부적정 감점	△10점	정성운	

